「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더누리사업- '문화예술 나들이'」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<(재)서울문화재단↔(재)국립극단> 업무협약서

(재)서울문화재단(이하"재단")과 (재)국립극단(이하"극단")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「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더누리사업-'문화예술 나들이'」(이하"사업")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협약의 목적) 본 협약은 "사업"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"재단"과 "극단"의 의무 및 권리를 정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사업개요)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.

① 사업명 :「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더누리사업 - '문화예술 나들이'」

② 사업개요

▢ 운영기간 : 2016년 01월 ~ 02월

▢ 사업주최 : 서울특별시,문화체육관광부,한국문화예술위원회

▢ 사업주관 : (재)서울문화재단

▢ 후 원 :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

▢ 사업목적 : 경제적, 사회적 여건 등으로 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함.

제3조(협약개요) 본 협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① 개 요 : 「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더누리사업 - '문화예술 나들이'」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

② 협약목적

▢ "극단"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"사업" 이용대상에게 관람 서비스로 제공하여 관람 활성화 유도

▢ 서울시 "사업" 대상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

제 2 장 의무 및 권리

제4조(의무 및 권리)

① "재단"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.

▢ "재단"은 "사업"의 이용대상자가 관람한 "극단"의 프로그램에 대한 공연 관람료를 지급하되 세부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

○ 공연 회차 별 예약 인원에 대한 관람료를 지급하며 관람료의 결제는 공연 당일 법인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

○ 단, 전석 관람 시, 예약 인원보다 실제 관람 인원이 더 적을 경우 아래와 같이 관람료를 지급함

- 인원차이 20% 이내 : 예약인원 관람료 지급
- 인원차이 20% 초과 : 실제 관람 인원의 관람료만 지급

▢ "재단"은 "사업"의 이용대상자에게 관람 시 편의를 위한 이동버스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

※ 이동버스 운영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

- "극단"의 월간 이동버스 지원 대수 한도 내에서 운영 가능(초과운영 불가)
- 30인 이상 단체 탑승 시에만 운영 가능
- 동일 구내 이동시 지원 불가하며, 공연장과 이용단체가 각기 다른 자치구에 위치 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단, 10세 이하 어린이 단체 또는 노년층 및 장애우 단체 관람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

② "극단"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.

▢ "극단"에서 진행하는 공연 프로그램을 2016년 01월 13일부터 02월 21일까지 "사업" 이용대상자에게 제공함

▢ "극단"은 본 협약 체결 후 3일 이내, "사업"에서 진행할 '공연 프로그램 리스트'를 반드시 첨부하여 "재단"에 제출해야 함

▢ "극단"은 제공하는 공연 프로그램의 관람료 책정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제공함

○ 1인당 관람료는 할인가 기준 최대 5만원 이하로 운영

○ 1인당 관람료는 정상가의 35% 이상의 할인율 적용

▢ "극단"은 "사업"의 이용대상(관람객)을 공연 회차 당 최소 30인 이상 단체관람 형식으로 모객해야 함

▢ "극단"이 모객하는 "사업"의 이용대상(관람객) 및 계층 비율은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사업 이용대상

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(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

② 독거노인,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거주자 등

③ 기타 경제적·사회적 문화소외계층 및 관람신청단체 인솔자 등

- 참여 계층 비율

① 60% :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(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

② 40% : 그 외 기타문화소외계층

▢ "극단"은 모객한 이용대상(관람객) 단체가 제출하는 '참가신청서' 및 '개인정보위임장'을 관람 7일전까지 반드시 "재단"에 제출해야 함

▢ "극단"은 관람 관련 이동버스 신청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 7일전에 "재단"에게 요청해야 함

▢ "사업" 대상자 여부는 관람신청단체가 제출하는 '참가신청서' 및 '개인정보위임장'을 통해 확인함

제5조(협약의 효력)

①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"사업"종료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본 협약서에 의해 체결된 업무교류 및 협력의 이행은 제3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제6조(협약 조항의 변경 및 해석)]

① 본 협약기간 중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본 협약서상에 정하지 않는 사항 및 협약 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발생할 경우는 "재단"과 "극단"은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상관례에 따른다.

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한 합의 관할은 "재단"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7조(신의 성실 이행) "재단"과 "극단"은 본 협약을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한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.

2016 년 01월 08일

상호 : (재)서울문화재단
주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
대표이사 : 조선희

단체명 : (재)국립극단
주소 :
대표자 :